

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8. 1. 24.(수) 09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 원 장
허 욱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표철수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제1차 및 제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서면회의 결과보고

- 제2차 및 제4차 서면회의 결과, <의결안건> 4건과 <보고안건> 1건이 원안대로 의결·접수되었음을 보고함
- 제2차 및 제4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⑥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견

- 국회의 2017년도 제51차 및 2018년도 제1차 전체회의 비공개안건의 회의록 및 속기록 제출 요구와 관련,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음영 처리 한 후 열람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함

⑦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⑧ 의결사항

가.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(2018-05-016)

-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2017년도 제4차 위치정보 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(주)콘텔라, 텔레나브코리아(유), (주)로드피아, (주)디엠엑스 등 총 4개 법인에 대해 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, 위치정보법과 관계법령 준수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.

나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8-05-017~024)

-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·운영실태에 관한 현장조사(‘17.10.10~‘17.12.28.)를 실시한 결과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등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안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·운영, 접속기록의 위·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,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·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(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)을 위반한 두나무(주)·(주)리플포유·셀렛(주)·(주)이야랩스·(주)야피안·(주)코빗·(주)코인원·(주)코인플러그 등 8개사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~1천5백만원을 각 부과 하고,

-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·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(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)를 위반한 (주)야피안·(주)코인원 등 2개사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을 각 부과하고,
- 개인정보를 3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 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한(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항 위반) 두나무(주)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,
-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·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(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 위반) (주)코빗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4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며,
- 또한, 이들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,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,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시정명령을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다.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8-05-025~035)

- o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유플러스(이하 '이통 3사')의 '17.1.1.~'17.8.31일 기간 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171개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,
- 이통 3사 및 유통점들의 행위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, 이통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03억원(SKT 211억원, KT 125억원, LGU+ 167억원)을 부과하고, 171개 유통점에 대해 100만원~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등 총 1억 9,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라. 이통3사 법인영업 및 대형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8-05-036~042)

- o '17.9.11.~'17.9.30일 기간 중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유플러스(이하 '이통 3사')의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(주)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,
- 이통 3사 및 삼성전자판매(주)의 행위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, 이통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3,900만원(SKT 2억5,030만원, KT 4,120만원, LGU+ 4,750만원)을 부과하고, 삼성전자판매(주)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9. 기 타

가. 현안 관련 논의사항

- KBS·MBC 및 방송문화진흥회와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상임위원 간 논의함

나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대내외 행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35)